



[시행 2020. 10. 20.] [법률 제17503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: 재산) 02-2110-3734, 3730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: 가족) 02-2110-4264, 3729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: 법인) 02-2110-3798, 3862

**1114** ( )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.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.

[본조신설 1977. 12. 31.]

<제17503호, 2020. 10. 20.>

- 1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(성적 침해에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)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.